

2012년 지방재정 관리 및 회계 · 계약제도 운용방향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이 상 길

I. 머리말

미국 애플사의 前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한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지금 당장은 위험한 일로 가득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좋은 징조입니다. 당신이 위험한 일들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흑룡의 해’인 2012년에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경제 키워드로 떠오를 것 같다. 2008년 리먼사태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는 지난해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정부의 재정위기로 확산되었다. ‘11.12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놓은 장기 유동성 공급 조치, ‘12.1월 유로존 국채발행 성공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신용평가기관들이 ‘트리플 A’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대외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단기간에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민간금융부문의 실패였다면,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정부 부문의 실패로, 특히 재정상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 아일랜드나 스페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급격한 재정긴축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므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북한변수와 함께 20년만에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등 대내여건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를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의 핵심 열쇠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대축인 지

방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12년도에는 지방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지방회계 및 결산제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 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등에 대해 유용하고 가치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큰 만큼 중소기업·지역업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계약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II. 2012년도 지방재정 관리 및 회계·계약제도 운영방향

1. 사전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위기의 선제적 대응

가. 추진배경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확대에 따라 지방채무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위기 발생의 우려가 확산되었다. 또 산하 공기업의 경영부실로 해당 지자체가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국제행사나 단체장 공약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해져 자치단체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0년 7월 20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주요내용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재정지표를 선정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정수지, 채무, 세입,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 관점에 대해 통합재정수지비율, 예산대비채

무비율, 채무상환비율, 지방세징수액현황, 금고잔액현황, 공기업부채비율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효과발생을 위해 지방채총액한도제와 지방공사채 사전심사제도를 연계하여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지표는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의 연구작업을 통해 도출하였다.

각 지표에 대해서 「주의」기준과 「심각」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준설계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과 상호성을 고려하였고 2009년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작업을 통해 하위 1~2%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이것은 2009년도가 지방재정이 가장 열악했던 해로 그 해의 하위수준보다 하락했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사전경보시스템은 자치단체를 상대비교하여 하위에 대해서 건전화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대신 재정위험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한 단체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전 감시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준을 초과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분석을 하게 된다.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제적 기반과 재정구조, 채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의 미래 채원 부담정도 및 우발성 채무, 공기업의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재정건전성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표가 부진한 단체는 2011년 10월에 신설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재정위험등급 심의를 받게 되는데 위원회는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배석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실무검토뿐 아니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권과 민주성을 보장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위험수준이 심각한 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의등급으로 지정한다.

「주의」등급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게 된다. 행안안전부장관이 「주의」등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하되, 재정건전화 계획의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주의」 등급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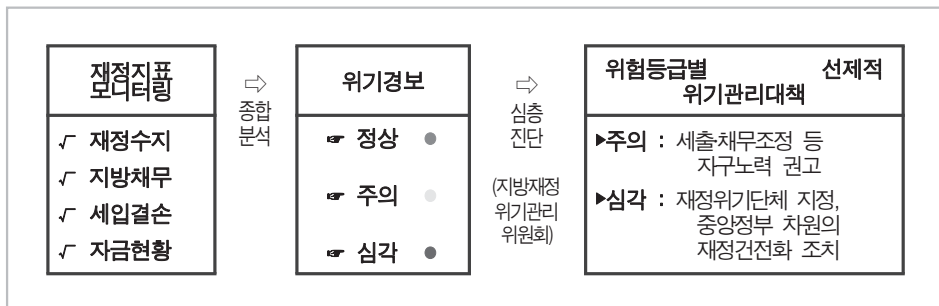
수립결과 및 이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이행실태가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필요한 권고 혹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각」등급 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정건전화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이행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각」등급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재정운용상 일정부분 자율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재정건전화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 지방재정 위기경보 및 위기관리대책 흐름도



다. 성과 및 향후계획

2011년 9월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수준은 2010년도에 비해서 약 5,382억 정도 감소하였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개별 자치단체들에서도 이 자비용을 절감하고 대내외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한편, 조식을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자구적인 재정건전화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성과

구분	2010	2011.9월	2011.12월	'10년대비 증감
채무잔액(평균)	32조6,641억	31조9,290억	32조1,259억	5,382억 감축
예산대비 채무비율(평균)	15.4%	14.8%	14.6%	0.8%p 감축

2012년에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연중 가동하여 모니터링 지표가 부진한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심층적인 재정건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분기별 추이 등을 점검하고 재정 위험상황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출구조 및 세입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단기 재정구조 컨설팅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FTMS(Financial Trend Management System) 등 해외 유사사례를 기초로 재정컨설팅이 자가 재정분석 기법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공시를 통한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공시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매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서,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여 도입하였다.

지방재정공시가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따라 2010년부터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공시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pas.go.kr)를 통해 통합공시를 하고 있다.

통합공시항목은 자치단체별 인건비·행사축제경비·민간단체보조금·의회경비·업무추진비등 주요 관심항목 지출현황과 예산대비채무비율·자체세입비율·통합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관련 주요현황 등 총 8개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합공시를 실시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재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A시의 주민이라면 A시가 행사축제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전국 73개 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A시와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012년도에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공시항목의 조정 및 활용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자치단체별 개별공시를 실시하고 10월까지 통합재정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공시와 통합공시를 통하여 주민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제도의 선진화

가.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단순히 수익, 비용과 운영차액만을 나타내 주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사업별 원가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자원의 효

율적인 사용,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 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원가 산출 등을 위한 원가계산준칙이 2010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준칙에 근거하여 2011년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시범 작성하였다.

원가를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원가대상을 설정하고 그 원가대상의 직접원가에 간접원가를 합산하여 사업총원가를 산출한다. 사업별 원가를 예산수립, 사업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수익¹⁾을 총원가에서 차감하여 사업순원가를 산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형 회계실체의 경상적 활동(사업추진,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원가정보와 사업형 회계실체의 서비스 제공 및 조직 운영등에 사용된 원가, 기타경비의 회수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²⁾와 비배분비용³⁾을 더하고 비배분수익⁴⁾을 빼서 계산하는데 이는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 동안의 조세 등 일반수익⁵⁾으로 충당해야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이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수익을 차감하면 조세 등으로 자치단체의 원가를 충당하고 남은 재정운영결과가 산출된다. 재정운영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 · 소모된 자원의 차이 즉, 자원의 사용결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2011회계연도 결산 완료 시점인 2012년 하반기에 전

-
- 1) 사업수익 : 사업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서비스 요금수익(사용료수익, 재산임대료수익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받은 보조금 등
 - 2) 관리운영비 :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운영경비
 - 3) 비배분비용 : 사업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비용(이자비용 등)
 - 4) 비배분수익 : 사업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수익(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 5) 일반수익 :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등)

자치단체에서 시범 작성하게 된다. 즉 전 자치단체는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보고서는 원가회계 도입 전 서식으로 작성하고 2012년 7월이후 추가로 원가회계를 적용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표2>는 원가회계 도입전후 재정운영보고서를 비교한 표이다.

2011년 원가회계 시범운영 결과 사업수익(세외수입)의 사업별 구분, 사업추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직접원가에 포함시키는 것 등 개선 필요사항이 도출되었다. 향후 이를 개선하여 원가회계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산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별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에서 비용감축, 수익증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과 있는 재정운영,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원가회계 도입전후 재정운영보고서 비교

(도입 전)		→	(도입 후)			
구분	회계별		구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I 비용			I. 사업순원가			
			II. 관리운영비			
II. 수익			III. 비배분비용			
			IV. 비배분수익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VI. 일반수익			
III. 운영차액(II - I)			VII. 재정운영결과(V - VI)			

나. 통합결산체계 구축

2007년 재무회계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이원적인 결산보고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이를 통합 일원화할 계획이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보고서는 예산회계(현금주의)와 재무회계(발생주의)간 인식방식에 따라 작성범위가 상이하나, 내용상 재무제표와 중복되므로 재무제표에 통합하되 차이점을 별도의 첨부서류로 설명할 계획이다.

현 행	개 편
① 세입세출결산서(지방재정법 § 51) ② 기금결산보고서(기금관리기본법 § 8) ③ 채권현재액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 59) ④ 채무현재액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 59) ⑤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법 § 47) ⑥ 물품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법 § 62) ⑦ 재무보고서(지방재정법 § 53)	① 결산개요 ② 세입세출결산서(기금, 성인지결산서 포함) ③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 재정운영보고서 - 순자산변동보고서 - 재정수지보고서 ④ 부속서류

이를 위해서 2012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무보고서를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부·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 확대된 정부 범위에 대응한 지방재정통계 개편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미래의 재정위험 예측 및 분석은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재정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재정운용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정통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재정통계는 ‘정부’의 범위가 국제기준과 상이했고, 정부와 한국은행간 통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적인 통계기준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국내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08년 1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온 결과, 재정통계의 적용기준이 되는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를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원가보상률을 적용해서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되, 질적인 기준도 병행해서 적용된다. 정부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과 자금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최근 3년의 평균 원가보상률^⑥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로 분류되며, 원가보상률과 상관없이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거나 R&D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정부

로 분류되게 된다. 현재 2,342개의 지방기금은 채무에서는 제외되고 재정수지에는 포함되었는데 개편에 따라 모두 포함되게 된다. 또한 131개 지방 공기업(지방공사 51개, 지방공단 80개)은 현재 모두 제외되었는데 원가보상률과 질적 요소를 적용·검토하여 원가보상률이 50%이하인 공사 중 4개 기관과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모든 공단(80개)이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먼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통계기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한 재정통계 개편에 따라 객관적 국제비교 및 재정상태의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 동시에 객관적이고 정교한 통계기반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계약 업무의 투명성 강화

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계약제도 마련

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제도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지역중소업체나 하도급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외 경기위축 등으로 업체의 수주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실적이나 경영상태 등의 평가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확대⁷⁾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지급내역 확인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그동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하던 건설노임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청소 등 단순노무용

6) 원가보상률 : 생산원가 대비 판매액 비율로 '05년 기준 OECD 조사 결과 21개 회원국 중 17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장성 판단기준

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기존의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공동계약상대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기존 기계설비공사는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12년부터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용

역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 업체 폐업시 고용승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용역 등 용역근로자 보호지침⁸⁾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근로자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지난 '09년 「지방계약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활성화 등으로 지방계약의 초석을 다졌다. 선진화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도적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진화과제의 추진을 보다 가속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치단체의 계약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과 계약체결 정보, 대금지급 및 설계변경 사항 등 계약 수 과정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계약 전문화를 위한 계약조직 통합작업⁹⁾을 전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입찰이나 계약 체결시 업체로 하여금 뇌물수수 및 담합행위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나 신기술을 반영할 경우에 사전에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 신기술 반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리를 예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계약의 기준을 자치단체와 건설업체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원처리 사례의 공유와 담당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통해 지방계약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8) '06.12.29 자치단체에 회계통첩(「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을 시행하여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 및 근로자 보호조건 부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회계통첩에 고용승계 등의 내용을 추가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12.1.16)

9)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로 분산된 계약조직을 본청으로 통합하고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

다. 자치단체 예산 절감을 위한 회계·계약제도 개선

그간 회계·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지난 '08년부터 시행해 온 계약심사제도¹⁰⁾의 경우 그간 제도 및 조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여 신규 사업에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부터는 계약심사 실적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심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등 민간이전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투명한 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회계·계약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계약제도 선진화 과제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올해에는 20여 년 만에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정치적 예산순환가설(Political Budget Cycle Hypothesis)에서 이론화될 정도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대규모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급증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재정건전

10)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예산절감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사전에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

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도의 힌두교 속담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다. “사람은 처음 30년 동안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은 지방재정을 분석·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재정분석·진단, 회계·결산, 계약 등 개별 제도들을 지방재정관리라는 큰 틀에서 유기적이며 시계열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재정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회복의 성과를 창출해나가야 한다. 2012년 지방재정관리의 과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자치단체의 좋은 살림 습관이 스스로 정착되고 운영된다면, 어떤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좀처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주민자치의 굳건한 뿌리가 될 것이다. ☺